

## 사업인정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80일
------	-----	-----------

신청인 (사업시행자)	성명 또는 명칭
	주소
신청내용	사업의 종류 및 명칭
	사업예정지
	사업인정을 신청하는 사유
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인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사업시행자)

인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계획서 1부</li> <li>사업예정지와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</li> <li>사업예정지 안에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에 관한 조서·도면 및 해당 토지등의 관리자의 의견서 각 1부</li> <li>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의 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1부</li> <li>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면허 또는 인가, 그 밖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 1부</li> <li>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협의내용을 적은 서류(협의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</li> <li>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(토지 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 또는 권리가 소재하는 토지의 세목을 말합니다)을 적은 서류 1부</li> <li>해당 사업의 공공성, 수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사업시행자의 의견서 1부</li> </ol>	<p>수수료</p> <p>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</p>
------	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##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